

動物藥事

□ 動物用醫藥品等 製造業 許可

업 체 명	세축 (제조업 허가 번호 제96호)	비 고
대 표 자	김성린외 1인	배합사료 첨가용 산제제조에 한함
본 사	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93 정안빌딩 3층	
제 조 소	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196-5, 200-4	

□ 動物用醫藥品等 製造業 施設 變更 許可

업 체 명	당 초	변 경
승화기업	미량광물질 원료	산제 및 미량광물질 원료

□ 動物用醫藥品等 輸入業 代表者 變更

업 체 명	당 초	변 경
대암축산	김 정 자	김 목 석

□ 狂犬病 發生 主意報 發令

- 일 자 : 99년 8월 20일
- 발령처 : 국립수의과학검역원
- 주요 증상
 - 평소보다 과민한 반응 보이며 신발 등을 물어뜯고 괴성과 함께 발광
 - 침을 삼키지 못하고 거품이 섞인 침을 흘림
 - 임상증상을 보인 후 2~7일내 마비와 호흡정지에 의해 폐사
- 예방 및 대책
 - 개·소·말·양 등에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
 - 사람에게 감염되어 공수병을 일으키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서 광견병으로 의심되거나 발병한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동물병원이나 가축방역기관 및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감염동물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즉시 보건소 또는 인근병원에서 공수병 치료를 받아야 한다.

□ 國家檢定 不合格 動物用醫藥品等의 廢棄·返送 處理指針

- 폐기(반송)대상 동물용의약품
 - 국가검정 불합격 통지 후 14일 이내에 재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제품
 - 재검정에서 불합격한 제품
 - 처리 기준
 - 국내 제조 예방약 : 폐기(소각·매몰 또는 고압멸균)
 - 수입 예방약 : 반송
 - 주관 기관
 - 처리 명령 및 확인(입회) 감독 : 국립수의과학검역원
 - 처리 실시 : 제조업체·수입업체
 - 처리 절차
 -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국가검정 불합격 동물용의약품의 폐기·반송 명령서 통보 및 농림부 보고
 - 명령 통보 : 재검정 미신청 제품은 검정 불합격 통보일 부터 20일 이내
 - 명령 내용
 - 폐기 : 업체명, 대상 제품명, 수량, 폐기일자·방법 등
 - 반송 : 업체명, 대상 제품명, 수량 등
 - § 폐기 일자 : 명령서 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서 수의과학검역원장이 결정
 - 반송 일자 : 명령서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처리토록 지시
 - 폐기·반송 실시
 - 폐기
 - 해당 업체는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가 입회 하도록 폐기 3일 전까지 수의과학검역원에 폐기장소 및 시간 통보
 -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 실시
 - 반송은 해당 업체 주관으로 처리
 - 불합격품 처리결과 보고
 - 해당 업체는 처리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(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)
 - 폐기 처리 : 객관적으로 폐기가 입증 가능한 현장 사진 등
 - 봉인상태, 해봉, 폐기장소 이송, 폐기 처리과정, 폐기완료 등 각 과정 촬영
 - 사진에 폐기인과 입회인이 함께 처리하는 장면 포함
 - 사진 촬영시 모든 사진에는 연월일을 표시
 - 반송 처리 : 반송 증빙하는 선적서류 등 첨부
 - 수의과학검역원은 분기별 처리실적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
- 폐기·반송처리 지침에 대한 건의
 - 협회는 수입완제품 국가검정 불합격품에 대하여 반송뿐만 아니라 폐기를 처리 방법으로 추가해 줄 것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 건의하였다.

□ 飼料管理法施行規則 無效確認 行政訴訟 進行事項

- 8월 26일 10시에 심리 예정이었던 행정소송이 사실조회 결과 미착으로 다음과 같이 연기 되었다
- 일 시 : 99년 9월 30일 10시
- 장 소 : 서울행정법원 211호 법정